

[공지사항]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추가발급 관련 안내

□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

- 등급변경신청 등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
 - 기존 승인된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의 발급 당시에는 인정유효기간 범위안에서 승인되었으나, 인정관리 SEQ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유효기간이 변동되는 경우
- 급여비용(단가)가 변경되는 경우
-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
-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에 기재된 수량 이상의 제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
 -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잡이, 간이변기의 경우에는 최대 사용 개수를 초과할 수 없음
-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의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다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
- 수급자의 보장기관(시·군·구)이 변경되는 경우
- 이용중인 복지용구사업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